

대학 발전 계획 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0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위원회는 수원대학교 대학발전계획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함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의 장·단기발전 과제를 연구·검토하고 그 구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 ① 이 위원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 한다.

1. 학교 발전을 위한 장·단기발전계획 및 경영전략 수립
 2. 각종 행정제도의 개선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
 3. 교내 각 부서 발전계획의 종합 및 조정
 4. 위 각호의 과제수행을 위한 조사 및 연구활동
- ② 위원회는 전항의 연구·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한다.

제2장 구성 및 임원

제4조(구성) 이 위원회의 위원은 전임교원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제5조(임원) ① 이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교원 또는 일반직원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제3장 회의

제8조(회의) 이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연구위원회회의로 구분한다.

제9조(전체회의) 전체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이 위원회의 중점과제 및 추진 우선순위 결정
2. 학교발전을 위한 여론 및 의견 수렴
3. 연구위원회가 부의한 안건 심의
4. 기타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심의

제10조(연구위원회회의) 연구위원회회의는 위원회 위원중에서 5인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하며, 다음의 기능을 담당

한다.

1. 전체회의에서 위임한 과제의 조사 및 연구
2. 위의 과제 수행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
3. 각 부서의 발전계획 및 제안 1차 심의
4. 전체회의에 부의할 안건 작성

제11조(회의소집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제12조(의결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소위원회) ① 전체회의 또는 연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정 과제를 한시적으로 연구·조사하는 소위원회
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학내외 인사를 그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제14조(회의록) 이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
여야 한다.

제15조(규정개정) 이 위원회의 규정 개정은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6조(운영세칙)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제17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원대학교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.